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6로 2021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양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확립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그 간의 추진 경위

- 2021. 3. : 자매결연 실무교섭 개시(영등포구↔울릉군)
- 2021. 3. ~ 5. : 사전교류 및 교류협력 공동 관심 분야 협의
- 2021. 5. : 자매결연협력사업(안) 부서 의견 조회
- 2021. 5. : 자매결연 실무협의
- 2021. 7. : 자매결연협력사업(안) 확정
- 2021. 7. :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 수립

○ 양 도시의 일반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울릉군
면적	24.37km ² (서울시 면적의 4.03%)	72.82km ²
인구	377,408명 (185,467세대)	9,019명 (5,332세대)
재정 규모	8,103억원 일반회계 7,750억원 / 특별회계 353억원 (재정자립도: 31.42%)	2,000억원 일반회계 1,972억원 / 특별회계 28억원 (재정자립도: 9.21%)
행정 기구	18개동 583통 4,932반 공무원 정원 1,476명	1읍 2면 25리 224반 공무원 정원 401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과 안양천, 그리고 안양천과 도림천, 대방천이 합류하는 지점 ▪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 ▪ 정치, 금융, 언론, 업무의 복합기능지역 ▪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 경인지역 사업발전의 근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국내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 독도·오징어축제 등 풍부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문화축제 보유 ▪ 오징어, 호박엿, 울릉약소(한우), 명이·부지깽이 나물 등의 특산물 유명 ▪ 동해상의 울릉도 본섬과 독도, 죽도, 관음도 등 44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짐

○ 교류 내용

- 문화·교육: 교육환경 개선, 독도체험관 ↔ 독도박물관 교류 전시회 개최, 온라인 전시회 통한 독도체험 대중화, 죽도 관광지 재개발
- 경제: 도농협력 생산자-소비자 간 농·수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울릉군 각종 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홍보
- 행정: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발전 도모

○ 자매결연 체결 예정일자·장소 및 체결방법

- 체결일자: 2021. 10. (예정)
- 장 소: 독도체험관(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2층)
- 체결방법: 서명 체결
- 체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경상북도 울릉군수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등포구와 경상북도 울릉군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상호 번영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영등포구의 자매도시는 국내 5개, 국외 3개, 우호협력체결 1개 도시임.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상북도 울릉군은 울릉도 본섬과 독도, 죽도, 관음도 등 44개(유인도 4, 무인도 40) 부속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독도·오징어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보유하고 2012년 국내 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음.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

구분	도시명	자매결연일	구분	국가명	도시명	자매결연일
국내	경남 고성군	'95.09.14.	국외	중국(북경시)	문두구구	'95.04.21
	전남 영암군	'95.10.17.		일본(오사카부)	기시와다시	'02.10.31
	충남 청양군	'95.10.24.		미국(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07.10.30
	충북 충주시	'15.07.28.		중국(상해시)	황포구	우호협력체결
	광주시 남구	'20.07.07.				

○ 자매도시와의 주요 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구민의 날, 문화축제 행사 등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
- 스포츠 및 청소년 도농 문화교류
- 국립 독도체험관 ⇔ 국립 독도박물관 상호 홍보
- 여의도 봄꽃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관광 상품 홍보
- 민간단체 자율적 상호교류 활성화 협력
- 생산자-소비자 농수특산물 판매지원 및 홍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첨부된 두 도시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받는 경우 (제의하는 경우 포함) ①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②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③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④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체결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인적·물적·문화·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한 상호 발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정도 등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양 도시간 공동의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로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